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핵산증폭검사를 제외한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장비를 반드시 따로 갖추어야 하였으나,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다른 비영리법인 등과 동일하게 핵산증폭검사를 제외한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위한 장비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은행의 허가를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준을 합리화하여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부 령

◉행정안전부령 제67호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 2018년 7월 17일

행정안전부장관 인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"0.5점"을 "1.0점"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초과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소방정 · 지방소방정	3년	0.111점	연수1년2년3년점수1.332.664.00
	소방령 · 지방소방령	5년	0.050점	연수1년2년3년4년5년점수0.601.201.802.403.00
초 과 경 력	소방경 · 지방소방경 소방위 · 지방소방위	4년	0.062점	연수 1년 2년 3년 4년 점수 0.74 1.49 2.23 3.00
	소방장 · 지방소방장 소방교 · 지방소방교	2년	0.125점	연수 1년 2년 점수 1.50 3.00
	소방사 · 지방소방사	1년	0.25점	연수 1년 점수 3.00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을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0.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1.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.

소방장·지방소방장, 소방교·지방소방교 및 소방사·지방소방사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9048호, 2018. 7. 17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에 있는 해당 계급의 월별 점수 및 연수별 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
<행정안전부 제공>

●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7월 17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"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"을 "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"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"등본"을 "초본"으로 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"제2항제2호"를 "제3항제2호"로 한다.

제19조 전단 중 "별지 제23호서식"을 "별지 제23호의2서식"으로 한다.

별표 1의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